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시행

통신판매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농림수산식품부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해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할 수 있다.

2. 개별적인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하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가) 표시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할 수 있다.

나) 표시시기 :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 글자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커야 한다.

라) 글자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2) 말로 표시하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해야 한다.

나. 인쇄매체 이용(키탈로그, 신문, 잡지 등)

1) 표시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2) 글자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1/2 이상 크기로 표시하거나,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별표1 제2호(3)의 포장 표면적(제품이 인쇄된 표면적)별 글자크기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